

### 붙임 3

## 전형별 가점기준 및 공인어학성적 환산 기준

구 분	우대사항	적용전형			부여가점 (만점기준)		비 고
		서류	필기	면접			
특 별 가 점	취업지원 대상자(법정)*	○	○	○	5% 또는 10%		관련법률에 의한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장애인	○	○	○	5%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	-	5%		
	다문화가족의 자녀	○	-	-	5%		
	북한이탈주민	○	-	-	5%		
일 반 가 점	한국사 능력검정	○	-	-	5%		3급 이상
	중소기업 근무경력	○	-	-	2%		실근무경력 만3년이상에 한함
자 격 증 가 점	전문자격증 보유자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5%	공단이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응시한 자에 한함
	일반자격증 보유자	-	○	-	기사, 기능장	3%	
					산업기사	2%	
					기능사	1%	
우리공단 청년인턴 가점**	2020년 인턴		○	○	-	서류전형 5%, 필기전형 2%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1개월 이상 경력에 한함
	2021년 인턴	우수인턴	○	○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2%	인턴수료(만근) 후 2년 이내 1회
		인턴수료자	○	○	-	서류전형 5%, 필기전형 2%	인턴수료(만근)자에 한함

- 1) 모든 가점은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 2) 특별가점 내의 우대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합산하여 특별가점으로 인정
- 3) 일반가점, 자격증가점, 청년인턴가점 내의 각 우대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해당가점으로 인정
- 4) 특별가점, 일반가점, 자격증가점, 청년인턴가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하여 인정
- 5) 청년인턴 가점은 우리공단 인턴수료(만근)일로부터 2년간 부여하되, 우수인턴의 우대가점은 인턴수료(만근) 후 2년 이내 1회로 한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등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보훈 전형은 제외)하고, 전형단계별 만점의 40%미만 득점자에게는 미부여(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미만 득점 시 미부여)

\*\* (우리공단 청년인턴의 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도에 입사한 우리공단 청년인턴은 서류전형 5%, 필기전형 2% 가점을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1개월 이상 경력자"에 한해 가점 부여

○ 가점 적용기준

구 분	우대사항	가점 적용기준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특 별 가 점	취업지원 대상자(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등록자	
일 반 가 점	한국사 능력검정	-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중소기업 근무경력	- 실근무경력 만3년 이상	
자 격 증 가 점	전문자격증 보유자	- [붙임4] 가점인정 자격증에 한함	
	일반자격증 보유자		
우리공단 청년인턴 가 점	2020년 인턴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1개월 이상 경력에 한함
	2021년 인턴	우수인턴	- 인턴수료(만근) 후 2년이내 1회
		인턴수료자	- 인턴수료(만근)일로부터 2년간 부여

○ 공인어학성적 구간 및 환산표

구간	TOEIC	newTEPS	JPT	新HSK (6급)	新HSK (5급)	TOEFL (IBT)	범위	비율
1구간	850	336	850	180	255	98	해당점수 이상	1
2구간	845	335	845		254	97	해당점수 이하	0.8
	800	309	800		210	91	해당점수 이상	
3구간	795	308	795		209	90	해당점수 이하	0.6
	750	285	750		195	85	해당점수 이상	
4구간	745	284	745		194	84	해당점수 이하	0.4
	700	264	700		180	79	해당점수 이상	

\* 공인어학성적은 구간별로 배점을 달리하며, 접수마감일 기준(2022.11.1.)으로 유효하여야 함

\*\* 위 환산표에 명시되어 있는 어학성적에 한하며,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국외응시, 조회 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